

재 정 경 제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올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 등으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곧바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 및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기간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 발주기관은 현장여건,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3조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2. 공사기간 지연 관련 조치사항

-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 및 호우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3. 옥외작업 관련 법규 준수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 '26.5.)"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공사현장에서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끝.

재정경제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감사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병무청장, 성평등가족부장관, 산림청장, 기상청장, 국가데이터처장, 새만금개발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유산청장,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청장, 국민통합위원장, 소방청장, 재외동포청장, 지식재산청장,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농촌진흥청장, 관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조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질병관리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장, 외교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한민국국회의장,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주무관

현성훈

사무관

한재수

계약정책과장

전결 2026. 7. 13.

임재정

협조자

시행 계약정책과-1010

(2026. 7. 13.)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어진동)

/ mofe.go.kr

전화번호 044-215-5218

팩스번호 044-215-5239

/ tjdgns7202@korea.kr

/ 대한민국 공개